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1.17.(화) 14:00	배포	2026.11.17.(화)

담당부서				
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검사1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	송경용	(02-3145-8410)
	담당자	팀 장	이철진	(02-3145-8412)
		팀 장	김재흥	(02-3145-8250)
		팀 장	최종담	(02-3145-8255)
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리스크감독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7120)
	담당자	팀 장	노경록	(02-3145-7130)

금융감독원, 금융권 침해사고 관련 대부업권 설명회 개최
- 최근 해킹사고 취약점 및 검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-

<주요 내용>

□ **금융감독원**은 **'26.11.17.(화) 약 70개 대부업체 보안·전산담당자** 등 **실무자**를 **대상**으로 **설명회**를 **개최**하였음

○ 최근 **금융권 해킹사고** 관련 **취약점** 및 **조치사례** 등을 **공유**하고, **외부 접점**과 **내부통제 체계**의 **자체점검 방법**을 **설명**하고,

○ **서민 고객**의 **정보**를 다루고 있는 **대부업권**의 **보안 취약점**이 **보이스피싱** 등 **심각한 2차 피해**로 **연결**될 수 있으므로, **정보보안 수준**을 **강화**하도록 당부하였음

금융권 침해사고 관련 대부업권 설명회 개요

☑ **일 시** : '26. 11. 17. (화) 14:00 ~ 15:00

☑ **장 소** : 금융감독원 2층 강당

☑ **참석자** : **(금감원)**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, 서민금융보호국장 등
(대부금융협회) 대부금융협회 전무, 본부장, 기획부장
(대부업계) 약 70개 대부업자 보안담당자 등 실무자(총 100명 내외)

☑ **주요 일정** :

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 ~ 14:10	▪ **인사말**	부원장보
14:10 ~ 14:40	▪ **외부접점 및 내부통제 체계 자체 점검방법**	디지털금융총괄국· 서민금융보호국 담당자
14:40 ~ 14:50	▪ **Q&A**	
14:50 ~ 15:00	▪ **대부업권 해킹사고 검사 사례**	

1 주요 당부사항

□ **김형원 부원장보**는 최근 금융권에서 **침해사고**가 **잇따라 발생**함에 따라 **대부업권**도 **보안상 취약점**을 **신속하게 정비**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아래와 같이 **당부**하였음

○ **방화벽**을 통한 **외부 접근**이 허용된 **모든 IT자산**, **영업·관리 목적**의 **API서비스**, **개발·테스트·임시운영 시스템** 등을 **빠짐없이 점검**하고,

○ **정보 유출**이 **우려**되는 **취약점**이 확인되는 경우 **외부접점**의 **연결**을 **즉시 차단**하도록 당부하였음

□ 또한, **정보보안**은 **대부업권**의 **신뢰**를 **담보**하는 **필수 투자**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 **자체 점검**이 **마무리**되는 대로 **취약점 개선**과 **보안수준 강화**를 위해 **필요한 조치**를 **신속하게 완료**하도록 당부하였음

○ **대부금융협회**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되는 **공통적인 취약점**, **개선 필요사항** 등을 **회원사들**에게 **전파**하여 **대부업권 전체**의 **보안수준**이 제고될 수 있도록 **지도**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□ 아울러, **침해사고 보고** 및 **대응체계**를 **확립**하기 위해 **대부업권**의 **적극적인 협력**을 당부하였음

○ **골든타임** 내에 **추가적인 피해 확산**을 **방지**하고 **효과적**으로 **대응**할 수 있도록 **침해사고**가 **발생**할 경우 **금융감독원**과 **KISA**에 **즉시 보고**하도록 당부하였음

○ **개별 업체**에 대한 **침해시도**가 **다른 업체**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**대부업권**의 **적극적인 협력**이 **매우 중요**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

2 설명회 주요 내용

□ 「**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 방안**('26.11.5.)」에 따라 **대부업권**도 **연말까지 모든 외부접점** 및 관련 **내부통제 운영실태**를 **자체 점검**해야 함

○ **방화벽 허용 정책**을 기준으로 **외부접점**을 **빠짐없이 식별**하여 **점검**하고, 외부접점 운영 관련 **내부통제 체계***를 **점검**해야 함

* 외부접점의 주요 위험과 미조치 현황에 대한 CEO·이사회 보고 여부, CEO 또는 전결권자가 보완조치에 필요한 인력·예산의 지원을 결정하는지 여부, 외부접점의 승인·보완·차단에 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

○ 개별 대부업체가 파악한 **침해시도 정황, 내용**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**全금융업권**에 **전파**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**침해사고 발생**시 **즉시 보고**해야 함

□ **전산시스템**에 대한 **제3자**의 **불법적인 접근**을 **차단**하고 **정보유출**을 **방지**하기 위하여 **신용정보법**상 **보안대책 수립·이행의무**를 **충실히 이행**해야 함

3 향후 계획

□ 이번 **외부접점·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**를 **분석**하여 대부업권의 **「보안 내부통제 가이드라인」**을 마련할 예정

○ **점검 내용**이 **부실**하거나 **취약점**을 **방치**하여 **개인신용정보 유출** 등이 **발생**하는 경우 **엄정 제재**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